

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(☐등록, 변동신고 ☐위탁병원 진료)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10일	
선순위 유 족으로 지 정된 사람	대상구분	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	성명		
	보훈번호		생년월일		성별		
	주 소						
			(전화번호 : , e-mail :)				
협의자	1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(인)	생년월일	-	
		주 소					
	2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(인)	생년월일	-	
		주 소					
	3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(인)	생년월일	-	
		주 소					
	4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(인)	생년월일	-	
		주 소					
	5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(인)	생년월일	-	
		주 소					

본인들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·제6조의2·제42조제7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·제64조제5항에 따라 위의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 귀하
보훈지청장

신청인 제출서류	1. 협의자(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)의 인감증명서(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) ※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 2. 「공증인법」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.
- 가. 유족의 순위
- ① 배우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)
 - ② 자녀
 - ③ 부모
 - ④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
 -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- 나. 유족 중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적은 사람에 우선 하되,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한다. 다만,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한다.
2.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.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등록신청서 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- 나.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를,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를 첨부한다.
- 다. 「공증인법」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,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 및 협의자의 날인(서명)을 생략할 수 있다.
3.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위탁병원 진료비용 감면대상자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. 부모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며,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제2호를 준용한다.
- 나. 부모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여부, 질환유무,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우선한다.

처 리 절 차

이 지정협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지정협의서 작성	➔	접 수	➔	결 정
신청인		보훈(지)청		보훈(지)청
확 인				
담당	주무	과장	(지)청장	